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안 제5조)
-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법에서 정의한 “시설주”(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구분하기 위해 “지원대상 시설주”(법 제7조의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을 제외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여 설치의무시설 외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관련한 사항들을 자문·심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인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은 주로 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되어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임. 이에 따라 서울 5개 자치구에서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아닌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안도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 및 지원하여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제4조에서 장애인등에게 부여된 접근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이성수, 유승용, 남완현
이예찬 의원(4인)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안 제5조)
- 라.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기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13. ~ 2. 1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설치한 편의시설의 소유자가 되며, 소유주로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